

[붙임]

채용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서

귀하는 당사 채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고 답변을 성실히 해주길
바라며, 답변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- 다 음 -

※ 질문사항의 기간 산정일은 임용일을 기준으로 적용

※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 시 해당 번호에 “√” 표시

1. 귀하는 현재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합니까?

① 해당되지 않음

② 해당됨

2. 귀하는 현재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합니까?

① 해당되지 않음

② 해당됨

3. 귀하는 현재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합니까?

① 해당되지 않음

② 해당됨

4. 귀하는 현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합니까?

① 해당되지 않음

② 해당됨

5. 귀하는 현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까?

① 해당되지 않음

② 해당됨

6. 귀하는 현재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경우에 해당합니까?

① 해당되지 않음

② 해당됨

7. 귀하는 현재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의 경우에 해당합니까?

① 해당되지 않음

② 해당됨

8. 귀하는 현재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까?

① 해당되지 않음

② 해당됨

9. 귀하는 현재 최근 5년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 해당합니까?

① 해당되지 않음

② 해당됨

10. 귀하는 현재 다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합니까?

① 해당되지 않음

② 해당됨

< 아 래 >
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
-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-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
11. 귀하는 현재 미성년자에 대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경우를 포함)에 해당합니까?

< 아 래 >
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
-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
① 해당되지 않음

② 해당됨

본인은 본 자료의 내용 및 취지 등을 이해하고, 상기의 답변이 사실임을 확인하며,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채용 취소 등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. 또한 본인은 사실 확인 등을 위해 본 자료 및 기타 자료를 수집·제공·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

성 명 : (서명)

생년월일 :

주 소 :